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854 제안년월일: 2019년 9월 4일 제 안 자: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의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절차상 직접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로 적립 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며, 출자· 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단서의 보고절차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 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 일부를 회계절차에 부합하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예비비 사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단서의 보고절차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수정 (안 제22조의2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예산 및 결산의 제출"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u><신</u> 설>	③ 출자·출연기관은 결산이후 예산에 추가	③ 출자·출연기관은 <u>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u>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10억 이상의	<u>분기별로</u>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사업비를 새로이 편성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비회기의</u>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고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 제목 중 "예산 및 결산의 제출"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u> 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	
	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